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6일 23시 44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사용허가	3

사용허가

2014.04.17 조회수 609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55
담당부서	시립도서관
상위법령	도서관법
조례	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6조
유형	1호 - 허가
등록사유	문화공보
법령공표일	신설규제
존속기한	2012-06-29
규제시행/폐지일	2012-06-29
규제목적	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시설물 보호
규제내용	제16조(사용허가)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도서관내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등록후변동결과	○ 2012. 7.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52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59

Yeosu Web Contents

